

|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|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2495 | 【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】<br><b>심사보고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|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7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3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4조)
-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통합지원 사업, 회의 등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통합지원 창구 및 조직 등 기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-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15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협력체계 구축, 통합지원 기관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19조)
- 개인정보 등의 보호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21조)

## 다. 근거법규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, 제21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의 진입 등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한 돌봄수요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나, 지금까지 이러한 노쇠, 장애,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는 시설이나 병원 입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
- 이에 본인의 욕구나 의사에 관계없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대신 본인이 거주하던 곳이나 거주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·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 '24. 3. 26)되어 2026. 3. 27. 시행을 앞두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- 상위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에 대한 책무,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규정하게 함에 따라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제정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통합지원협의체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협의체를 둔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21조(전담조직 등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
2.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·조정,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
3.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
4. 통합지원 관련기관,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·조정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·면·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